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희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 B0, B- 이상	B- 이상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통과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하 “등급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적격성 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④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여부 확인 시 창업일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